

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사유 공시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공시합니다.

1. 선임근거 : 2023년 제2차 이사회 의결 (2023.03.30)

2. 선임내용

구분	성명	직위	선임일자
이사회 의장	문규영	기타비상무이사	2023.03.30
선임사외이사	최세학	사외이사	2023.03.30

3. 선임사유

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의 소집과 안건의 주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사회 안건, 운영 등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은 이사가 의장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다년간 이사회 의 의장을 역임하여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사회에 부의되는 각종 현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문규영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사들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.